

- 사회적경제 인식개선과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-
(사회적)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 모집 공고

(사회적)협동조합의 사회공헌형 사업모델 발굴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서대문구 소재 (사회적)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.

2020년 5월 26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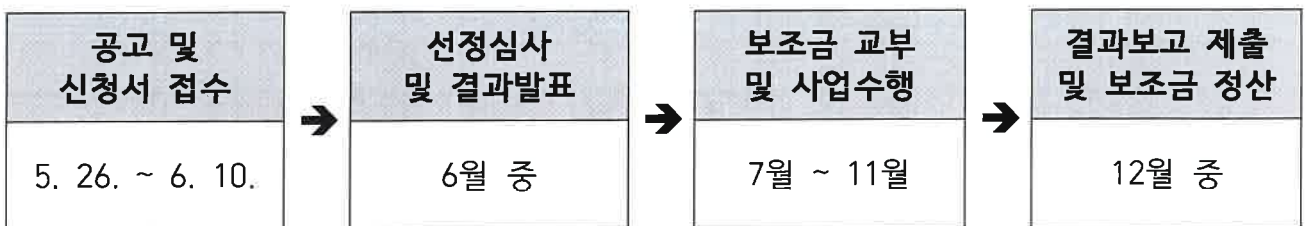
서대문구청장



I

공모개요

- 공 모 명 : 2020년 (사회적)협동조합 활성화사업
- 신청자격 :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서대문구 소재 (사회적)협동조합
- 사업기간 : 2020. 7월 ~ 2020. 11월
- 지원규모 : 총20,000천원(기업별 5,000천원 내외, 4개 기업 내외)
* 기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추진일정(안)



- * 심사일정은 개별 안내하며, 심사일 지정시간에 불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기업에 있음
- * 2020. 11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출 완료

○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0. 5. 26.(화) ~ 6. 10.(수)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, 등기우편 접수 中 택1

○ 접수처

- 이 메 일 : kmlee10@sdm.go.kr

- 등기우편 : (03653)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86, 2층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

※ 등기 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, 이메일 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에 한해 유효

※ 등기 및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유선(☎ 02-330-8298)으로 접수 확인 요망

○ 제출서류

구 분	제 출 서 류
공 통	1) 공모 신청서 1부 [별지 1호] 2) 사업 실행계획서 1부 [별지 2호]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[별지 3호] 4) 신고확인증 등 (사회적)협동조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5)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6) 전년도 결산증빙 등 협동조합이 운영 중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
선 택 (우대사항)	7) 유사 프로젝트 실적 및 수행 역량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 8) 해당 프로젝트에 편성된 기업의 자부담 사업비 증빙 서류

○ 심사기준(안)

구 분	심 사 항 목
기업의 역량	- 신청 (사회적)협동조합의 사업활동 내용 등 - 기업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기여 가능성
사업계획의 적정성	- 사업계획의 구체성, 실행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- 사업내용 및 관련 행사 등의 연계성
예산의 적절성	- 신청금액 및 예산편성 산출내역의 적절성 - 신청금액의 적절성 및 항목별 구체성
기업의 사업수행 의지	- 유사 프로젝트 경험과 성과 및 기업의 수행 의지 - 보조금과 기업 보유 예산의 연계성을 통한 효과성 - 사회적경제분야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형성 가능성

< (사회적)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예시 >

-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(사회적)협동조합 사업 모델 개발
 - 기업이 자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 및 육성
 -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의 확장
 - (사회적)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자원 공유 및 공동 협업 사업 진행
 - 지역 주민 및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 모델 개발
 -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활성화 모델 발굴
-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
 - 지역주민과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속적 연계방안 모색
 -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기업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
 - 사회적경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포럼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
 - 지역주민 및 조합원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진행
 - 기타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

II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

- 편성 가능한 예산의 종류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- 집행 가능항목, 집행 불가항목 등 확인 필수
- 보조금 교부 및 집행
 - 보조금 교부 : 기업별 일괄 교부(사회적경제과)
 - 보조금 집행 :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
 - 보조금 반환 :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사업중단 및 보조금 반환 조치
 - ①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②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, 지원조건 위반
 - ③ (사회적)협동조합의 자격상실(조합 해산 및 인가 취소 등)
 - ④ 보조금 수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사업에 미착수한 경우
 -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
 - ⑥ 동일 사업으로 타 보조금(국고 및 지방보조금) 지원을 받은 경우
 - ⑦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한 경우

○ 유의사항

- 사업계획과 세부예산내역 및 세부일정 등은 구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일정 등을 신청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
 - ※ 연락처 기재 오류, 수신 거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기업에 있음
- 기업별 현황 · 심사내용 · 기업별 득점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
-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보조사업자는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(보조금 일괄 인출 불가)
-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후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지출 개시(보조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 준수)
- 사업비의 세부 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시 구청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수
-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 정산서류 제출
-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,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제출, 사업 보고서 제출, 사업비 정산 등의 일정 준수 필수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함(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무효)
-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기업에 있음
- 상기 공고사항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○ 문의처 : 서대문구청 사회적경제과(☎02-330-8298, 8718)